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헌장

제정: 2022.05

대한전선은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를 통해 사람을 위한 기업문화를 만들고,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통해 고객 감동을 추구하며, 창의적 사고와 도전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실현하여 더 나은 미래로 (We connect the future)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.

대한전선은 이러한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와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임을 인지하여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. 대한전선은 본 기업지배 구조헌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 증진, 이해관계자 권리보호,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1장. 주주

제1조(주주의 권리)

-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 - 이익 분배 참여권
 -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
 -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
 -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
-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 - 정관의 변경
 - 합병,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
 - 해산
 - 자본의 감소
 -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
-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.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,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2조(주주의 공평한 대우)

- ①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.
- ②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.
- ③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.
- ④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, 체계적이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하여 관리한다.

제3조(주주의 책임)

-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게 행동하고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2장. 이사회

제4조(이사회의 기능)

-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,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③ 이사회는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 · 관리 · 감독한다.
- ④ 이사회는 법령, 정관,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(이사회의 구성)

-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 이어야 하며,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

하며,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외이사 수를 구성한다.

③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이사의 자격)

-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,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, 전체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이사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, 산업계, 금융계, 학계, 법조계, 회계·경영 분야 또는 공공부문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, 선 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.
- ③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, 기업가치의 향상 및 주주권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며, 이사는 특정 성별, 연령, 국적, 인종, 종교, 교육수준,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
제7조(이사의 선임 및 추천)

- ①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
제8조(사외이사)

-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,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.
-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,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.

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의 운영)

- ①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.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,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·운영한다.
- ③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0조(이사의 의무 및 책임)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회사의 핵심가치 추구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.
- ② 이사는 직무상 얻어진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③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④ 이사가 충분한 검토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고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⑥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·영업적·직업적 이해에 직·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심의나 의사결정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.

제11조(보상)

①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.

제3장. 감사기구

제12조(감사위원회)

-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, 최소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한다. 또한,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역할 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 업무 집행의 적법성, 기업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, 재무보고의 정확성,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,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등을 수행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그 독립성에 대한 평가와 주요 활동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,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공시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외부감사인)

-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.
-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,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. 이해관계자

제14조(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)

- ① 회사는 직원, 고객, 주주, 채권자, 공급자, 협력사,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,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

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,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한다.

③ 회사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.

제5장.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제15조(공시)

-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
- ②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,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으며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

제16조(기업 경영권 시장)

- ① 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,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회사는 합병,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